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4. 참고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제237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방세법 개정(2009. 2. 6)에 따라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하였으며
- 또한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